

# 사회적기업의 본질에 대한 시론\*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권 병 욱\*\* · 이 준 우\*\*\*

(e-mail: kwon-b@hanmail.net )

---

## 目 次

---

- I. 머리말
  - II. 사회적기업의 기원과 정의
  - III. 선행연구의 검토
  - IV.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의의
  - V. 요약과 전망
- 

## I. 들어가는 말

최근 학술적 영역에서나 실천적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비등해지고 있다. 주류 경제학의 시장 메커니즘에 이상기류가 장기화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 실패를 비판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self-interest)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Homo Economicus)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장 만능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실업의 만연,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 노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책의 미비를 비롯하여 환경파괴나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 등이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주

---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제1저자, 한밭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경영학박사

류 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학 등의 관점에 포섭되어 기업의 수익구조나 경제적 가치창출 등 그 성과적 측면에 경도되어 왔다. 주류경제학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대중의 반응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이윤 극대화라는 행동원리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회적기업의 연구동향을 점검하여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사례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장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사회적기업의 기원과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은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적절히 분석하기 위한 의미 규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 3장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적 기업의 본질을 주관적이나마 탐색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시론(試論)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 작업은 다소 추상적이고 중층적으로 검토되겠지만 사회적기업이 특정 공간에서 적절하게 자리매김하고 향후 궁극적 지향점을 향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우리사회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전망을 기술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선행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보고된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 II. 사회적기업의 기원과 정의

이 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특히 그 기원을 둘러싼 독특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그 시대적 배경 또한 다양하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주목할 경우 그 기원에 대해서는 더욱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논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활동한 비영리 영역(Non-profit sector)의 진화에 맞춰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19세기 초·중반에 걸쳐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지역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했던 소규모의 많은 단체들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다. 그 후 1970년 후반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업적 성격의 비영리 조직들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자선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삭감으로 귀결되고, 보조금과 기부에 의존하던 자선단체들은 자체적인 수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상업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M.F. Doeringer, 2010, pp.291-293). 이 비영리 단체들은 저소득층에게 저가의 안경을 판매하면서 무료 시력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전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빈곤이나 노숙자, 인종차별, 환경오염, 약물남용,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개선과 해결책의 일환으로 공공재적 서비스와 교육이나 예술, 건강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영리적 실체로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대와 운영 방침의 전환에 따라 사회적 기업은 상당 규모의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업(기업자선활동), 영리와 사회적 목적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혼합기업), 미션수행을 위해 상업 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사회적 목적조직, 비영리조직의 계열사, 비영리 비즈니스 파트너십)등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J.A. Kerlin & K. Gagnaire, 2010, p.172).

이와 달리, 유럽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비영리영역의 연동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현저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던 유럽의 비영리 단체들은 197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기에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활동의 주안을 두었다. 특히, 장기 실업자의 급증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연동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영리 단체가 실업문제의 해결을 활동의 핵심으로 규정한 것은 초기의 자선개념에서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지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M.F. Doeringer, 2010, p.294).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효율적인 장기 실업에 관한 정책이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계층의 주거문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도시 재개발사업,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사업 등 새롭게 대두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사업들이 주로 제 3영역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M. Nyssens, 2010, p. 64).

그 가운데 영국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게 사회적 기업

1)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가운데 단지 12%만을 장기실업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실업자의 40%가 장기 실업자에 속한다.

영역을 발전시켜 왔다. 그 기원은 1844년의 로치데일(Rochdale) 선구자들의 협동조합운동에서 모색한다.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자선단체들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거래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단체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 것은 1999년에 들어서였다.

영국정부는 1999년에 출판된 기업과 사회적 배제(Enterprise and Social Exclusion)에서, 빈곤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잠재적 기여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영역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야 말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유용한 도구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통합하는 사회적 포섭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통합적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1997년에 수상 직속으로 설치된 사회적 배제과가 2002년 5월부터 부수상 관할로 이관되면서, 사회적 배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몰두한 것이다. 토니 블레어 수상 역시 사회 참가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주권의 확립과 연대적인 사회재생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야기된 빈곤문제를 비롯한 실업의 급증, 소득격차의 확대, 젊은 10대 여성들의 임신율, 노숙인 수의 증가 등 사회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용이한 사람들을 사회로 통합하는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해결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한 것이다(DTI, 2002).

영국의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 제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이 발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의 불공평과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사회적기업의 핵심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신념이다(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2010, 2010, p.30).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개인적인 문제나 지역사회에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혁신적인 해결책 제안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을 함의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국가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이 다르며, 각국이 직면했던 경제적 환경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되링거(M. F. Doeringer, 2010, p.291)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나 토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현공간의 환경상황과 지역 혹은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링거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social)”과 “기업(enterprise)”개념을 결합하여 인류사회 혹은 인간의 후생복리를 고려하는 기업조직이라고 정의한다(M. F. Doeringer, 2010, p.292).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개념의 근본적인 해석을 근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이란 구성원간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함의하며 사회적 기업은 그 의미를 실현하는 주체(기업)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EMES 연구 네트워크<sup>2)</sup>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사회, 정치, 경제적 전통을 토대로 네 가지의 경제적 기준과 다섯 가지의 사회적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이념형을 구체화하였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계속성, 고도의 자율성, 경제적 리스크와 유상노동의 실시를 규정하고, 사회적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시민에 의한 설립, 자본의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결정,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익분배의 제한 등을 적시하고 있다(J. Defourny, 2001, pp.16-18).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참여와 자율성을 토대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비영리 사적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02년 통상 산업성이 공표한 “사회적 기업: 성공을 위한 전략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에서 사회적기업은 본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출자자나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과 지역에 재투자 하는 기업체라고 정의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사업으로 주로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기 위하여 거래의 형태를 취하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발생을 겨냥하지만 그 이익은 사업과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연구자인 D. Young은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 민간 조직

2) EMES는 Emergence des Enterprise Sociaux on Europe Research Network의 약자로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의 등장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서 EU회원국 15개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사회적기업 연구를 위한 공통된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EMES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사회적 지표와 경제적 기준이라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D. Young, 2008, p.23). 따라서, 비영리 조직은 정부활동의 보완기능을 수행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의 제공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출발하고 개인기업의 재정원칙과 혁신의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라고 정의한다(Alter(2007, p.1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기업은 각 국가가 직면했던 경제적 위기의 특성과 각 사회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의 실체를 반영한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빈곤자, 실업자, 여성, 노숙인, 장애인, 노약자들을 사회로 통합시키는 일련의 실천과 환경오염, 공중위생 등 생활환경 관련문제, 인종차별 철폐 등의 사회 혁신을 유인하고, 그 실천의 담보를 주안으로 하는 것이다.

### Ⅲ. 선행연구의 검토

일반적으로, 일본의 사회적 기업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오랜 역사를 갖는 협동조합과 NPO 등의 비영리조직에서 그 맹아를 찾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혼합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특수 비영리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기업체도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섭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보다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기업(Community Business)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경기침체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결속이 붕괴되면서 정부보조금에 과다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비영리조직과 커뮤니티 기업의 역할(Ichiro Tsukamoto & Mariko Nishimura 2010, p.290)에 주목한 것이다. 지방정부는 비영리조직과 지역사회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을 위한 상호의존적이고 동등한 협력자로 간주한 것이다(Ichiro Tsukamoto & Mariko Nishimura 2010, p.291).

1998년 특정 비영리법인 활동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에게 NPO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미션과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유인하였으며, 1990년 후반부터 시행된 장기보호보험제도 등 정책적 변화는 비영리조직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분야 진출을 통하

여 수입창출욕구를 부추기는 상업화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사회적 사명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조직들이 확산된 계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고 사회관련 사업이나 사회혁신을 유인하면서 상업 활동을 추구하는 혼합형 기업으로서 위치한다는 것이다.

아키야마(秋山, 2011)는 유럽형·미국형 사회적 기업론을 고찰하여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일본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공공의 주체간 상호부조를 통한 활기찬 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공동체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키무라 외(木村 外, 2012)를 비롯하여 NPO법인 edge대표이사 타무라(田村, 2010), 중소기업정비기구(2011)에 의한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하시모토(橋本, 2009)의 일본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비영리 법인을 연구의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협동조합,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논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적 접근,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이전까지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Community Business)적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고 주장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영역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미즈호(みずほ) 총합연구소의 츠카고시(塚越, 2010)는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이란 정책 보고서에서 영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활동사례에 주목하고 일본의 사회적기업과 비교하면서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그는 하토야마(鳩山) 수상이 2009년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제안한 “새로운 공공성”(新しい公共性) 구상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규명한다.<sup>4)</sup>

새로운 공공성은 마을재건이나 개호(介護), 복지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官)으로 표명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기업들을 통하여 교육이나 양육, 마을재건, 방법·방재에 관한 일에서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부조에 의해 살아가는 일본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새로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橋本 理(2009)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橋本은 2009년 자신의 논문 사회적 기업의 현상과 과제(社会的企業論の現状と課題, pp.136-139)에서 일본의 사회적 기업을 1) NPO론적 관점에서, 2) 제3섹터의 담당자로서 협동조합의 존재에, 3)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사업조직의 제 활동에 대하여, 4)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론과의 관련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4) 새로운 공공선언에서, 1995년 1월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진재에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즉석의 공동체, NPO, NGO,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 조직한 협동의 장을 통하여 상호부조를 도모하던 점을 주목하고 그것이 새로운 공공의 원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新しい公共宣言 평성 22(2010)년 6월 4일 참조).

은 공공성은 사회적 과제의 새로운 해결책이 창출되거나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세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NPO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수법을 적용하여 활동하는 사업체는 전통적인 지역조직이나 봉사조직(volunteer)과 더불어 사회적 리턴에 의해서 사회에 다양성을 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공공의 중요한 담당자이다. 기업 역시 사회로부터 수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을 통하여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공헌하는 새로운 공공의 중요한 담당자이다<sup>5)</sup>.

이상에서 NPO와 사업체, 기업, 봉사조직,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 등은 새로운 공공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주도하며, 그 수단으로써 비즈니스 활동이 허용되는 사회적 기업을 지칭한다. 평성(平成) 22년(2010년) 6월 4일의 제 8차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의 새로운 공공 선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자 고령화(少子高齡化)가 진행되고 성숙기에 접어 든 일본사회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과 물자를 더욱 투자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도 그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새로운 공공에 의해 서로 돕고 활기 있는 사회가 출현하면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고 즉 상호 신뢰가 높고, 사회적 비용이 낮으며 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2010년 6월 4일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의 새로운 공공선언에서).

이상의 논의에서 일본의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수익구조를 갖는 혁신적인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 이 같은 사업을 본래 업무로 경영하는 조직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을 기대한다.

#### IV.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의의

앞에서 미국과 영국을 근간으로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일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경제성을 강조할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5) 이상의 내용은 평성 22(2010)년 11월 12일 새로운 공공 추진회의 정부의 노력에 대한 새로운 공공 추진회의의 제안에서 인용한 것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제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 이 점은 사회적 기업을 주류경제학이나 경영학, 회계학적 관점으로 포섭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수익성 창출에 따른 그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의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본래 public의 번역어로서 주로 학술적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사회 일반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성의 주체를 정부나 행정으로 대표되는 관(官)으로 간주해 온 과거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다. 특히 전후 정치적 혼란이나 무질서 속에서 관 주도적이고 행정 중심적인 사회 유지의 효율성과 시장 중심의 경제적 공공성에 그 무게 중심을 두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행정이나 시장이 실현하지 못한 공공성의 실현주체로서 가능성을 내포한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은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구현이라는 국가적 비전 및 상당수의 목표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성공을 재건이나 사회적 포용과 같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해결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윤리적 시장을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잣대를 높이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개선한다 (Cabinet Office, 2006(2011), pp.34-35).

하토야마 내각의 “새로운 공공선언”에서 표명하는 사회 역시, 서로 돕고 활기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상호신뢰와 주민의 행복도가 높은 사회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공공성의 담지체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그간 사회로부터 배제되었거나 소외되었던 빈곤자, 무식자, 장애인, 이민자, 노숙자, 싱글맘 등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를 포섭하여 정상적이고 공평한 삶을 지향하는 사회적 사명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주체이다. 사회적 기업의 목표내지는 사명이 사회가 직면하는 빈곤, 장애, 건강, 교육, 약물남용, 가정폭력, 고령, 환경과 같은 다양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때 이점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태어나 생로병사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누구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권의 보장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공평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은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 인권선언 제 23조 1, 2, 3항과 제25조의 1, 2항을 통하여 인간적 삶을 보장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1항). 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2항).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의 의식주의 문제는 물론,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각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복지라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주체가 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는 실업자, 노숙자, 취약계층 및 칩거자라고 하는 사회 부적응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입안자들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기업적인 비영리조직 및 커뮤니티 기업들을 통해 전략적 지역사회 재건과 사회통합, 노동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T. Ichiro & N. Mariko, 2010, p.291).

사회적 기업에서 경제성을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근로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정액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적인 삶의 보장이란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은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유인한다. 이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의 실현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성이란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들의 활동을 실현할 자율성의 보장을 가리킨다. 아울러 그러한 의사결정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 원칙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율과 평등, 개방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한다. 그것은 지역이라는 미시적 차원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으로 확대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본질에 해

당한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주식 소유에 따른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주 거버넌스 개념을 초월하여 기업 내 구성원 스스로가 동등한 의사결정 및 운영, 관리의 주체로서 사업 활동을 전개해 간다는 것이다. 최근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업 민주화, 경제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라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소외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경영자나 소속된 종업원이 다 함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비롯한 의사 결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주의 총액이나 주식의 수가 아닌 1인 1표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의 초석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자본의 창조와 확산을 주도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동시에 사회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밀접하다.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관계의 내용과 특징을 근간으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으로 작동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은 조직이나 공동체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통합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다른 자본과는 달리 조직이나 공동체의 도덕규범에 익숙해 질 필요가 있고 충성심, 정직, 책임감 등의 덕목을 획득을 필요로 하며 신뢰나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인간의 행동원리에 기초한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사회적 연대나 통합을 유인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경쟁 중심의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인간본연의 사회성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지의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확산을 담당하는 존재인 것이다.

영국의 내각 사무처 제3섹터청이 발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2011)"은, 최적의 상태일 때 사회적 기업은 이용자와 긴밀히 교류하며 신뢰를 쌓는 역량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중요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신뢰는 집단 혹은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 관습 등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이자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신뢰를 통해서 행위자들이 협동하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통합을 모색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다. 또 다른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는 자원이 동원되는 교환, 의존, 제휴와 같은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이면서, 한 개인 혹은 타 기업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

함으로써 새로운 특성, 새로운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창발 특성(emergent property)에 주목한다. 이 점에서 네트워크는 우리주변의 다양한 관계로부터 성립하고 그 관계를 통하여 관련된 행위자들이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고 자원을 전달, 교환하는 사회적 관계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명령체계나 변동하는 가치체계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호혜성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유지되는 상황에 적합하다(Powell, 1990, p.304).

## V. 요약과 전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기원과 정의를 미국과 유럽의 예를 통하여 개괄하고 일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유럽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발생은 사회, 문화적 차이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정의에 있어서도 약간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 그리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본 연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별하는 작업은 다음 기회에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 어떻게 차용되고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현관의 역할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 역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유럽적인 측면과 미국적인 측면이 혼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형태들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간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해 볼 때 사회적 기업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는 공공성의 실현주체, 인권의 보장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 경제 민주화,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확산이라는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립되길 바란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생산, 이윤 차원에서 분배의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성을 설명했다면, 사회적 기업은 빈곤자나 장애인, 노령자나 노숙자나 이민자나 싱글맘 등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과의 연대와 통합에 기초한 공정하고 공평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은 인권보장과 결합한다. 이점은 공공성과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혜택이 자칫 복지로부터 소외되거나 경시될 수 있는 대상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고 호혜적인 관점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의미하며 사람처럼 살 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선언의 수호라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무배제성이나 자율성의 배제와 맥을 같이한다. 기존의 기업 조직이 오너 중심 혹은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에서 발생하는 독단성이나 비민주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들의 1인 1표라는 평등성에 기초하는 기업의 민주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사의 총화에 따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확산의 주체라는 점이다.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연대를 실현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기능은 상호 신뢰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대표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신뢰와 협력에 의한 상호작용은 다시 신뢰와 협력을 창출하는 구조의 이중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의 본질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기업가들이 단순히 기업가적 태도에 경도되면서 사회적 사명이나 목적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일은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나 지원자들로 하여금 창업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해당 기업분야와 합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통합이나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단순히 기업차원을 강조하여 수익창출만을 도모하는 기업사이의 지원의 차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일문]

- 新しい公共円卓会議(2010), 新しい公共宣言, 新しい公共円卓会議資料集, 1-11
- 秋山緒絵子 (2011), 日本における社会的企業論の現状と課題, 岩手大学大学院人文  
社会科学研究紀要, 第20号, p p 51-60
- 木村富美子 他(2011), 社会的企業の現象と課題-新しい公共性の担い手の事業活動の  
分析-
- 経済産業省(2008), ソーシャル ビジネス 研究会報告書.
- 境 新一(2010), 社会的課題解決ビジネスと社会的企業に関する考察-イタリアの社会的  
協同組合とイギリスのコミュニティ利益会社の事例をふまえて-成蹊経済研究,第187号:  
314-356.
- 鈴木正明(2009), 英国のソーシャルエンタープライズ-日本の社会的企業育成への示唆  
を探る-日本政策金融公庫論集 第3号: 1-24.
- 第8回 新しい公共円卓会議資料 (2010), 『新しい公共宣言』
- 塚本一郎 (2011), 社会的企業: 非営利セクターの新しいモデル (計画行政) 第34, 券,  
第3号. p p 45-50
- 塚本一郎(2009), 非営利セクターの新しいモデルとしての社会的企業, 自治体チャンネル  
8月,p12.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aigo/service07/  
index.html)2009/8/22
- 中小企業総合研究機構(2010),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事業評価 pp. 1 - 7.
- 中川雄一郎(2005). 社会的企業とコミュニティの再生-イギリスの試みに学ぶ, 共同の発見  
4(153): 5-19.
- 西山茂(2011). 社会的企業の業績評価-業績評価指標を中心に-, 早稲田大学  
WBS研究センター早稲田大学国際経営研究 42: 43-53.
- 橋本理(2009), 社会的企業論の現状と課-kuri.jm.kansai-u.ac.jp/dspace/.../ku-1100  
OSK-200901 25. pdf
- みずほ総合研究所(2010), 注目高まる社会的企業, 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 1-2
- 八木橋慶一(2011). 英国地域再生と社会的企業-労働党政権期における挑戦その意義,  
人間福祉学研究,4(1): 29-47.

### [영문]

- A. P. Kropotkin (1914/2007),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김영호 역  
『만물은 서로 돕는다』 르네상스, 2007

-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2010),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조영복 판권화 역, 2011, 영국의 사회적 기업육성계획, 사회적 기업연구원, 시그마프레스, 사회적 기업 연구총서 2010-6
- D. Young(2006), Social Enterprise in Commu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A. :Theory, Corporate form and Purpo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6(3), pp. 245-255.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 H. Arendt(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Press,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1996, 한길사
- J. A. Kerlin(2010), Social Enterprise: A Global Comparison. 조영복 역 『사회적기업: 국제적 비교』, 사회적기업연구원, 시그마 프레스, 사회적기업연구총서 2010-4.
- J. Coleman(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J. Defourny & M. Nyssens(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ed) Marth, Nyssens: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J. Defourny & M. Nyssens(2008)(eds).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EMES Research Network
- J. Gregory. Dees(1998), Enterprising Nonprofit, *Harvard Business Review*, 76(1), pp. 54-64.
- M. Nyssens(2010), ed. J. A. Kerlin(2010), Social Enterprise: A Global Comparison. 조영복 역 『사회적기업: 국제적 비교』, 사회적기업연구원, 시그마 프레스, 사회적기업연구총서 2010-4.
- M. F. Deoringer(2010), Forstring Social Enterprise: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Analysi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20, pp. 291-324.
- T. Ichiro & N. Mariko(2010), ed, J. A. Kerlin(2010), Social Enterprise: A Global Comparison. 조영복 역 『사회적기업: 국제적 비교』, 사회적기업연구원, 시그마 프레스, 사회적기업연구총서 2010-4.
- W. Powell(1990), "Neither Market and Nor Hierachy: network Form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 Behavior*, 12, pp. 295-336.

## 要 旨

本研究は、最近関心を浴びている社会的企業の本質を探るものである。この観点から社会的企業の定義を国際的動向に照らし検討し、日本の研究事例などを触れながら論議を進んだ。

社会的企業はその社会が直している様々な社会的問題の解決を狙いにすることにおいて社会的企業の定義は簡単に言えないのである。日本の社会的企業の研究状況と先行研究などを踏まえてその定義がつけられる。すなわち、社会的企業とは社会的問題を解決し、組織の持続ができるような収益構造をもつ革新的なビジネスを果たすかあるいは同じビジネスを本来の仕事とする組織体のことを指すのである。以上のことに基ついて社会的企業の本質を探ってみた。特に、鳩山総理の立場表明によつて社会的企業の性格規定を行った塚越の研究は本研究に役立った。

社会的企業は公共性を実現する主体として捉えられるし、人権を守ることと普遍的福祉の担い手として見なすことができる。また、経済民主主義を実現していく役割を果たすこと社会的資本の創造とそれらを広げる担い手として位置つけられる。このような社会的企業のすがた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官主導的に進まれた社会的企業の育成政策とその評価に示唆することが大きい。社会的に直面している色々な問題の解決は行政組織の介入ではなく、社会の構成員の自律的かつ能動的な参与によってできることを含んである。したがって経済的支援による社会的企業の育成ではなく、社会的企業の本質に関する理解の地平を広がつてその発展を図る政策の転換が求められる。

キーワード：社会的企業、公共性、経済民主化、普遍的福祉、社会的資本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